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898
----------	-------

발의연월일 : 2025. 7. 31.

발 의 자 : 안도결 · 김태선 · 민형배
이재관 · 김 윤 · 박 정
조계원 · 김준형 · 김영환
김현정 · 김남근 · 문대림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법인세 세율이 인하되면서 현행법은 법인세의 세율을 과세표준에 따라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최소 9%에서 최대 24%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음.

법인세 세율 인하 당시, 법인세 부담 완화로 기업투자가 확대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장기적으로 세수가 증가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음.

그러나 법인세 인하에 따른 투자 증가와 세수 확대라는 선순환 효과는 발생하지 않았음. 민간투자는 2022년에는 1.2% 증가하였으나 2024년 1.0% 감소하였음. 세수는 2023년 56조 4천억원, 2024년 30조 8천억원의 대규모 결손이 발생하였음.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술 패권 경쟁, 기후위기 대응 등 구조적 전환기에 정부의 전략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이 확대됨. 그러나 2025

년 역시 저성장 등으로 세수전망이 낙관적이지 않고, 세수와 지출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현재 경제환경과 기업의 여건을 고려한 세제 개편이 필요함.

이에 과세표준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율을 2022년 개정 이전 수준으로 복구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천8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7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3천억원 초과	653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제55조제1항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8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3천억원 초과	654억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소

득에 대한 법인세의 세율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5조(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추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55조(세율) ① ----- ----- ----- ----- ----- ----- ----- ----- ----- ----- -----.												
1. 내국법인의 경우(제60조의2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1. ----- -----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text-align: center;">과세표준</th><th style="text-align: center;">세율</th></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억원 이하</td><td style="text-align: center;">과세표준의 100분의 9</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td><td style="text-align: center;">1천8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9)</td></tr> </table>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천8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9)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text-align: center;">과세표준</th><th style="text-align: center;">세율</th></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억원 이하</td><td style="text-align: center;">과세표준의 100분의 9</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td><td style="text-align: center;">1천8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9)</td></tr> </table>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천8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9)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천8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9)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천8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7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
3천억원 초과	62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2.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8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
3천억원 초과	626억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② (생략)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7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3천억원 초과	653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2. ----- -----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8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3천억원 초과	654억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② (현행과 같음)	